

규약 개정(안)

항목	개정 前	개정 後	비고
제21조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	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2.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. 위원장 신임에 관한 사항 4.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5. 조합의 중요한 정책사항 표결에 관한 사항	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2.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. 위원장 신임에 관한 사항 4.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5. 조합의 중요한 정책사항 표결에 관한 사항	현행 노조법과 정열
제40조 회계감사 위원구성	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회 대표위원을 포함한 <u>7인으로 구성</u> 하고, <u>3인의 후보위원을</u> 둘 수 있다.	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회 대표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 하고, 2인 이내의 후보위원을 둘 수 있다.	조합 규모 축소에 따른 회계 감사위원 축소
제62조 단체교섭 위원구성	본조합이 교섭대표 노조가 되는 경우 본 조합의 단체교섭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 1.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 2.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<u>9인 이상으로 한다.</u>	본조합이 교섭대표 노조가 되는 경우 본 조합의 단체교섭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 1.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 2.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.	단체협약과 정열
부칙		부 칙(2025.03.27) 제1조 【시행일】 본 규약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【준용】 본 규약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	